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조)
- 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 다.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안 제7조의2)
- 라. 제한·금지·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 (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 마.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3)
-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학사고심의위원회

제5조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면제 규정 적용)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의 면제)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3. 제한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3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경우. 다만, 수입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중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을 “다음 각 호의 경우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허가물질(다만, 해당 물질이라 하더라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 법 제1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

제10조의 제목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한물질”로,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수입허가”를 “수입신고”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의 해당하는 자가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제22조제1항에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4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결과에 대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의3.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

5의2.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제22조제2항제5호 중 “금지물질의 취급허가”를 “금지물질·제한물질의
허가·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허가 등”을 “허가, 신고, 변경허
가 및 변경신고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영업허가”
를 “영업허가, 영업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시약”을 “시약
판매업 및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
25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수리(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수리(한국환경공단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제2호에 아목을 너목으로 하고, 파목부터 하목을 버목부터 서목
으로 하며, 너목부터 머목까지는 버목부터 터목으로 하고, 버목부터 서
목을 고목부터 노목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법 제64조제2항제1호의2	180	240	300
--	----------------	-----	-----	-----

별표 2 제2호더목(중전의 카목) 위반행위란 더목 중 “전단”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5	600	800	1,000
-----------------------------------	----------------	-----	-----	-------

별표 2 제2호러목(중전의 타목) 위반행위란 러목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호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1호의3	180	240	300
파.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1호의4	180	240	300
하.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5	600	800	1,000

별표 2 제2호어목(중전의 거목) 위반행위란 어목 중 “않은 경우 또는”을 “아니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7	600	800	1,000
---	----------------	-----	-----	-------

별표 2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의2	600	800	1,000
---	------------------------	-----	-----	-------

별표 2 제2호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법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 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 호의2	600	800	1,000
허.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 제조·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 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 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 호의3	600	8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의3호까지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의3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8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부터 제2의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로 한다.

⑦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부터 제2의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⑧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로 한다.

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부터 제2의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종> 제10호 중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⑫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중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에서 제2의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로 한다.

⑮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3호의 허가물질, 제4호의 제한물질, 제5호의 금지물질 및 제7호”로 한다.

⑯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종전의 「화학
물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 <u>화학물질관리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이란 「 <u>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 <u>삭제</u> >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u>법</u> 제4조제4항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중소기업에 대한 <u>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u>		1. ----- <u>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 등”이라 한다)</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u>법</u>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 <u>관리위원회</u>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법</u> 제17조제5항에 따른 <u>유해</u>		3. ----- <u>유해</u>		

<u>화학물질의</u>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10. <u>유해화학물질</u>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1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 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u>유해화학물질</u>의 대체물질 개 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생 략) <신 설>	<u>화학물질등</u>----- ----- 4. ~ 9. (현행과 같음) 10. <u>유해화학물질등</u>----- -----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화학사고심의위원회</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 ----- ----- -----. 1.·2. (현행과 같음) 3. <u>유해화학물질등</u>----- ----- 4. (현행과 같음) 제7조의2(<u>소비자에 대한 특례 등 에 관한 면제 규정 적용</u>)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
--	--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

----- 유
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
의 중지 해제 -----

-----.

② -----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
제 요청서-----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의 면제)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3. 제한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3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경우. 다만, 수입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허가물질(다만, 해당 물질이라 하더라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 법 제1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

·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한물질-----
-----법 제18조제5항-

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
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신 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
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 수입신고-----
----- 한정한다)

4. 제7조의2제1항의 해당하는
자가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
입하려는 경우

제20조의3(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48조의
4제3항에서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
의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
물질의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24조에 제2항 및 제3

<신 설>

5. (생 략)

<신 설>

6. 6의2. 삭 제

7. ~ 10.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 10. (생 략)

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결과에 대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의3.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7. ~ 10.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금지물질
· 제한물질의 허가·신고---

6. -----
-----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7. ----- 인체등유
해성물질 -----

8.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6840